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577
----------	------

제출일자 : 2024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달성군 보훈회관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 보훈회관	옥포읍 비슬로458길 12	지상4층 (연면적 1,313.69㎡)	2명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협의회장	관리소장	계약직
인원	2명	1	1	-

라.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실시 후 80점 이상 시 재계약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9. : 재계약 서류 접수
- 2024. 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아. 성과평가 결과

- 평균 87점(적합)

자. 향후일정

- 2024. 11. : 군의회 동의
- 2024. 12. : 재계약 체결 및 공보 게재
- 2025. 1. : 위·수탁 개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제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도 예산 78백만원(전액 군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재계약)** ①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무위탁의 재계약 적정성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제4조의3제2항을 준용하되, 재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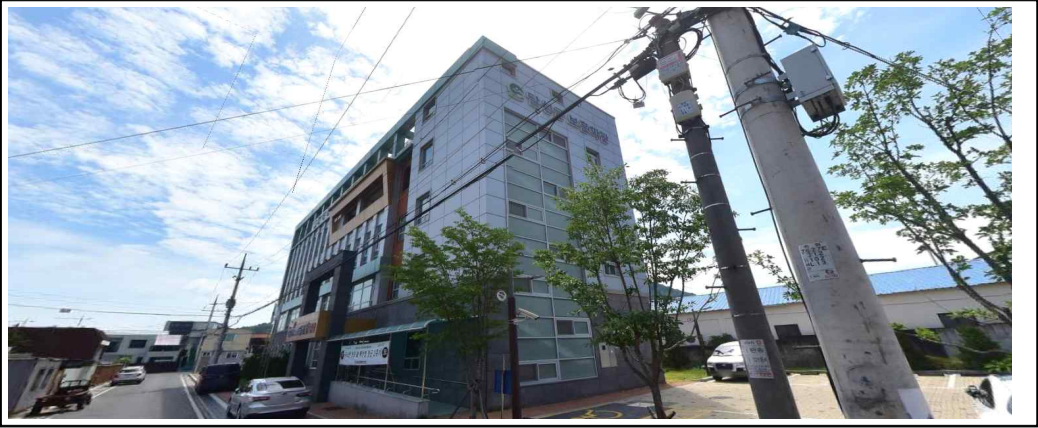
1 기본 검토사항

대상 사무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민간위탁 추진 목적	○ 달성군 보훈회관의 체계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 보훈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공자 단체 회원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위탁 근거	○ 법적 근거 -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7조 -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제9조 -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위탁 내용	○ 추진경위 - 국가보훈기본법 및 자체 방침 등 ○ 추진현황 - 2016. 8. : 달성군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 수탁(최초) - 2019. 1. : 달성군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 수탁 (3년 단위 재계약) - 2022. 1. : 달성군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 수탁 (3년 단위 재계약) ○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 위탁내용 - 보훈회관 시설관리 제반 사무 - 입주한 보훈단체의 행사 및 사무 지원

적 정 성 검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위탁 운영이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운영 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탄력성, 잦은 인사 교류 등 연속성 저하 · 보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 및 보훈 회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향시 회관을 개방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 보훈단체 연합회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운영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안정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확보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운영 예산 편성, 정산서 검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확보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보훈회관을 운영하며 얻은 경험들과 보훈단체 지원 방안을 연구하며 쌓은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재계약 의사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자원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단체 행사지원 등 수행 결과를 통해 성과 측정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점검 ○ 위탁사무 책임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성군 보훈회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인력이 유용하고 운영관리면에서 효율적임.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 . (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부) -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여)
----------------------	---

<p>기존 수탁 기관 및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명 : 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 ○ 수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 탁 금 : 78,247,000원 (2024년) ○ 위탁기관 선정방법 :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p>수탁기관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명 : 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 심의 												
<p>민 간 위 탁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 연간지원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도별</th> <th style="width: 30%;">민간위탁금(천원)</th> <th style="width: 60%;">세부 산출내역</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td> <td>78,247</td> <td>보훈회관 운영비 48,520 공공요금, 시설 수선유지비 29,727</td> </tr> <tr> <td>2023년</td> <td>76,970</td> <td>보훈회관 운영비 48,520 공공요금, 시설 수선유지비 28,450</td> </tr> <tr> <td>2022년</td> <td>75,253</td> <td>보훈회관 운영비 48,520 공공요금, 시설 수선유지비 26,733</td> </tr> </tbody> </table> <p>※ 매년 최저임금 조정에 따라 위탁금 상승</p>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4년	78,247	보훈회관 운영비 48,520 공공요금, 시설 수선유지비 29,727	2023년	76,970	보훈회관 운영비 48,520 공공요금, 시설 수선유지비 28,450	2022년	75,253	보훈회관 운영비 48,520 공공요금, 시설 수선유지비 26,733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4년	78,247	보훈회관 운영비 48,520 공공요금, 시설 수선유지비 29,727											
2023년	76,970	보훈회관 운영비 48,520 공공요금, 시설 수선유지비 28,450											
2022년	75,253	보훈회관 운영비 48,520 공공요금, 시설 수선유지비 26,733											
<p>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회원들의 협력과 각 보훈단체 응집력 강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보훈단체 활성화 방안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를 지원 할 수 있음 ○ 다발적으로 활동하던 보훈단체의 거점지로서 중심역할을 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보훈 관련 활동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p>전문가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재위탁이 적격함.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설명	달성군 보훈회관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8길 12		
	시설규모	지상4층, 연면적 1,313.69㎡		
	시설용도	달성군 소속 보훈단체 사무실		
	개소일자	2015년 12월 1일		
	이용대상	보훈단체 10,045명	종사자수	직원 2명
	보유장비	해당 없음		
위치도				
지역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성군의 면적은 총 426.61km²이며, 6개 읍과 3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관할지역이 넓어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특수성 및 입주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단체 상호 간 협의를 통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현장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달성군 보훈회관 전경〉</p>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사유서

현황 및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의 입주 단체 수: 24년 10월 기준 총 10개 보훈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회 등 10개 단체 무상 사용(2021. 1. 1. ~ 2025. 12. 31.) ○ 예상 문제점 및 대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문제점 : 달성군 면적 총 426.61km², 도농복합지역으로 관할지역이 넓고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대처방안 :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협의회를 조직하여 관리하고자 함 																						
수의 재계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 표명 - 민간위탁심의회 재계약 적정여부 검토 결과 적정 ○ 공개 모집하는 경우 예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혼란 및 연속성 결여 - 예산 등의 추가 지출 비용 발생 우려 																						
대상기관 검토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45%;">위탁사무명</td> <td>달성군 보훈회관 운영</td> </tr> <tr> <td>예산 및 기간</td> <td>민간위탁금(운영비): 229백만원 1차(22년): 75백만원 / 2차(23년): 76백만원 / 3차(24년): 78백만원</td> </tr> <tr> <td>대상기관명(대표자)</td> <td>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박승국)</td> </tr> <tr> <td>주요사업</td> <td>입주한 보훈단체 행사 및 사무 지원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 보수 등</td> </tr> <tr> <td>설립일자 및 주요연혁</td> <td>2015. 12. 1. 준공/ 2016. 8. 5. 설립 등기</td> </tr> <tr> <td>인력현황</td> <td>총 2명(비정규직 2명)</td> </tr> <tr> <td>근로자 고용안전성</td> <td>정규직비율 : 33% 이직률 : 0%</td> </tr> <tr> <td>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td> <td>민간위탁금 229백만원 이자수입 외 해당사항 없음</td> </tr> <tr> <td>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td> <td>해당없음</td> </tr> <tr> <td>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td> <td>적정</td> </tr> <tr> <td>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 시 작성)</td> <td>적정(특이사항 없음)</td> </tr> </table>	위탁사무명	달성군 보훈회관 운영	예산 및 기간	민간위탁금(운영비): 229백만원 1차(22년): 75백만원 / 2차(23년): 76백만원 / 3차(24년): 78백만원	대상기관명(대표자)	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박승국)	주요사업	입주한 보훈단체 행사 및 사무 지원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 보수 등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2015. 12. 1. 준공/ 2016. 8. 5. 설립 등기	인력현황	총 2명(비정규직 2명)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 33% 이직률 : 0%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민간위탁금 229백만원 이자수입 외 해당사항 없음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해당없음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적정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 시 작성)	적정(특이사항 없음)
위탁사무명	달성군 보훈회관 운영																						
예산 및 기간	민간위탁금(운영비): 229백만원 1차(22년): 75백만원 / 2차(23년): 76백만원 / 3차(24년): 78백만원																						
대상기관명(대표자)	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박승국)																						
주요사업	입주한 보훈단체 행사 및 사무 지원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 보수 등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2015. 12. 1. 준공/ 2016. 8. 5. 설립 등기																						
인력현황	총 2명(비정규직 2명)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 33% 이직률 : 0%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민간위탁금 229백만원 이자수입 외 해당사항 없음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해당없음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적정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 시 작성)	적정(특이사항 없음)																						

※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 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회장 박승국)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8길 12/ 053-614-3837

3. 설립목적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달성군 보훈회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단체 및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달성군 보훈단체, 유공자 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안보의식 계도와 사회공익 증진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설립 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15. 12. 1.	달성군 보훈회관 준공
2016. 8. 5.	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 설립 등기

5. 주요사업

- 보훈회관 시설관리 제반 사무
- 입주한 보훈단체의 행사 및 사무 지원
- 보훈회관 방문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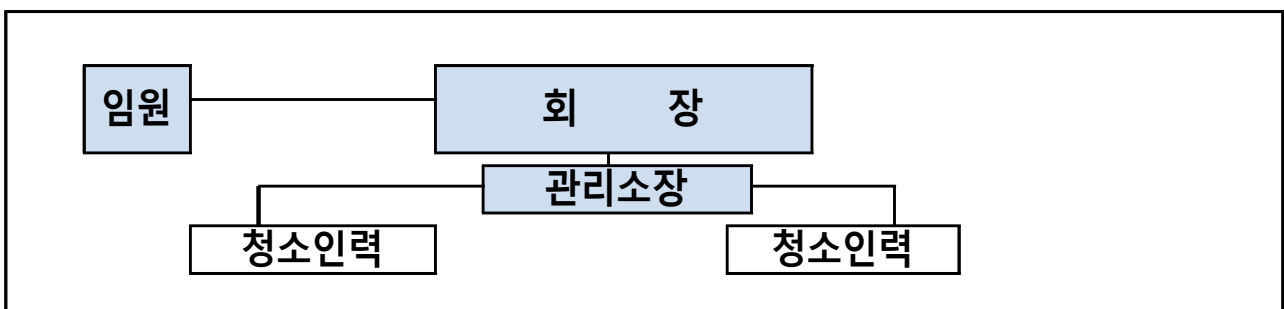
6. 보훈단체연합회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회 장	박승국	달성군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장
총 무	임동호	달성군 무공수훈자회 회장
임 원	박창우	달성군 광복회 회장
임 원	이광무	달성군 상이군경회 회장
임 원	박태진	달성군 전몰군경유족회 회장
임 원	김정미	달성군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장
임 원	김영칠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임 원	현경호	달성군 재향군인회 회장
감 사	박수일	달성군 고엽제전우회 회장
감 사	임규원	달성군 월남전참전자회 회장

7. 직원현황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관리소장	근무자	-	달성군 보훈회관 관리 총괄	2024. 01. 01. ~현재	정규직
청소인력	근무자	-	환경정비	2024. 1. 1. ~2024. 2. 28.	기간제

8. 조직도



9. 재무현황

가. 재 산 : 총2,388,000천원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본재산	부동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388,000

나. 부 채: 해당없음

다. 수 입: 총 33,70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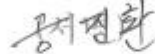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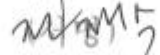




내 용	연 수입액(원)
이자 수입	33,704

10. 재협약 현황 및 향후 계획

재 협 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협약 회수: 3회, 총 수탁기간: 9년 - 재협약 기간 : 3년 2회
서 비 스 개 선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회관 입주단체 : 광복회 등 10개 단체 10,045명 ○ 입주 단체 전적지 순례, 국립묘지 참배 등 각종 보훈 행사 지원 - 10개 단체 상·하반기 전적지 순례 20회 이상
사 업 추 진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우수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단체 및 회원 상호 간 활동 지원 -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군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사회공익 증진 ○ 동종 시설 간 비교우위사항(외부 또는 자체 평가자료 별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10개 구·군 중 3개 지자체에서 보훈회관 관련 조례를 통해 보훈회관 운영비를 위탁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 보훈대상자의 자활 능력 배양 등을 위해 보훈단체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관리·운영됨이 타당함. ○ 언론보도사항, 대외 수상실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 105건, 보훈대상자 표창 35건 등
성 과 평 가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일시: 2024. 9. 27. ~ 9. 30.(4일간, 서면심의) ○ 평가기관: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달성군보훈회관 운영 성과평가 재계약 여부 심의 ○ 평가점수: 87점 ○ 총 평: 원활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단체 간 화합 및 지역 특화 보훈행사 개발 필요 <p>※ 성과평가결과서 첨부</p>

<p>감사 실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자: 2024. 1. ○ 정산 내역 확인 및 이자 반납 완료
<p>서비스 개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목표: 입주 보훈단체 활동을 공유하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기여 ○ 개선방안: 매달 보훈단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단체 간 활동을 공유하여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개선
<p>향후 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성군 보훈회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단체 및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달성군 보훈단체, 유공자 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 달성군 보훈회관 위탁관리·운영 재계약 심의	
심의요지	▶ 심의 대상 시설 및 수탁기관 - 시 설 명: 달성군 보훈회관 - 수탁기관: 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대표: 박승국) - 재계약 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의결 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15조에 따라 달성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 결과 재계약이 <u>적정</u> 부적정 함을 의결함.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 9. .</p> <p>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p>		
위 원 장	정 은 주	
부위원장	공 진 환	
위 원	곽 동 환	
위 원	전 제 수	
위 원	송 종 구	
위 원	김 홍 수	
위 원	남 명 숙	
위 원	박 연 근	

심 사 집 계 표

심사결과(점수)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합계	평균								
520	86.6	80 (제외)	90	80	85	90	95 (제외)	85	90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점수 합계 및 평균

심사위원 개별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평균점수 87 점으로 위 기관을 달성군 보훈회관 수탁기관으로 선정함이 적당 /부적당 한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24. 9. .

위 원 장	정 은 주	정은주
부위원장	공 진 환	공진환
위 원	곽 동 환	곽동환
위 원	전 재 수	전재수
위 원	송 종 구	송종구
위 원	김 흥 수	김흥수
위 원	남 명 숙	남명숙
위 원	박 연 근	박연근

심사평가표

항목	심사 내용	배점	적용 기준	배점	점수	
공신력	수탁기관 형태, 설립 목적과 보훈회관 운영과의 적합성	20	· 매우 적합함	20		
			· 비교적 적합함	15		
			· 보통	10		
			· 비교적 적합하지 않음	5		
			· 적합하지 않음	0		
	달성군청 및 지역사회 협력 정도, 사업수행 의지	20	· 매우 잘함	20		
			· 비교적 잘함	15		
			· 보통	10		
			· 비교적 잘하지 못함	5		
			· 전혀 잘하지 못함	0		
사업수행 여건	직원 구성 및 인력 배치	10	· 적합함	10		
			· 보통	5		
			· 적합하지 않음	0		
	시설물 운영 및 관리	20	· 매우 잘함	20		
			· 비교적 잘함	15		
			· 보통	10		
			· 비교적 잘하지 못함	5		
			· 전혀 잘하지 못함	0		
	운영 계획의 적정성	예산 및 설비 관리, 보훈회관 운영 사무	10	· 적합함	10	
				· 보통	5	
· 적합하지 않음				0		
운영 실적	보훈회관 운영 경험	10	· 3년 이상	10		
			· 3년 미만	5		
보훈회관 입주단체 협의회 대표 인지도 및 평판	보훈단체 내외부 평판, 지역사회 및 보훈단체 회원 간 소통 및 교류 정도	10	· 좋음	10		
			· 보통	5		
			· 나쁨	0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_____ (서명)